의 안 번 호 제2586호~제2589호 2025. 1. 15.(수) 10:00 제366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

검 토 보 고 서

안건 : 4건 (개정조례안3, 폐지조례안1)



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중

목 차

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
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
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
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
조례안5
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6

1 /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589호

O 제출일자 : 2025. 1. 9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총무과장)

O 회부일자 : 2025. 1. 9.

2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및 정원 조정 현행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정원관리 기관별・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 및 별표3 관련)

- 총 계:685명 ⇒ 685명(-)

- 일반직 : 649명 ⇒ 649명 (-)

• 3급 : 0명 ⇒ 1명 (본청 +1)

• 4급 : 4명 ⇒ 3명 (본청 △1)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및 정원조정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.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2 /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586호

○ 제출일자 : 2025. 1. 7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장)

O 회부일자 : 2025. 1. 7.

2. 제안이유

O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로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
 - 16개부서 소관 / 20개 자치법규
- O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표현 및 용어 정비(위원 해촉사유 등)
 - (현행) **심신장애** 등 → (개정)**부득이한 사유** 등
 - 직무수행에 대해 제3자가 판단해 위원 해임 등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

4. 관련법령

○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로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3 /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587호

○ 제출일자 : 2025. 1. 7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체육사업소장)

○ 회부일자 : 2025. 1. 7.

2. 제안이유

O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

3. 주요내용

O 「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 폐지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

5. 검토의견

- 본 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.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588호

O 제출일자 : 2025. 1. 7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체육사업소장)

○ 회부일자 : 2025. 1. 7.

2. 제안이유

○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선수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보장하고, 지도자 및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신설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○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·선수의 인권 보호 조치 조문 신설(안제24조의2)

4. 관련법령
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5조(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)
- 「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」 제5조 · 제17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조치 강화와 지도자 및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